



제 624호 2024. 8. 29 (목)

입법예고

제2024-3901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9440
제2024-3921호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9450

공 고

제2024-3864호 김해시 공인조례 제6조(등록) 및 제10조(공고)	39458
제2024-3913호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부분 준공) 공고	39459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을 반영함
-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음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 조례 내 사용 용어 정의 명확화(조례안 제2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42조)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조정(규칙안 제33조)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우선순위 기준 변경(규칙안 제3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50935)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2(부원동, 김해시제2청사)
 - 2) 담당부서: 수도과 급수관리1팀
(전화: 055-330-3881, FAX: 055-722-4939, E-Mail: kbang150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수도과 급수관리1팀(☎055-330-3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의 건 서

공 고 명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 건 제 출 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검 토 의 건
(의 건 제 출 내 용)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개정이유

-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가 2024.2.15.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내 사용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급수설비의 노후화 기준 명시(안 제42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4.8.6 ~ 2024.8.20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4.8.6 ~ 2024.8.20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4.8.6 ~ 2024.8.20
- 입법예고 : 2024.8.29 ~ 2024.9.18 (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 의견 :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 2024.10.

김해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시설로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단,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함)</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p> <p>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제2조(정의)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옥내급수관</u>”이란 「<u>수도법</u>」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u>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u></p> <p>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u>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시설로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1. <u>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u></p> <p>2. <u>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단,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u></p> <p>3.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p> <p>4. <u>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p> <p>5.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p>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 2024.2.15. 제정된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를 반영함
- 시민의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기준 정비(안 제33조)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에 대한 상세 기준 변경
 - 지원 우선순위 기준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4.8.6 ~ 2024.8.20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4.8.6 ~ 2024.8.20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4.8.6 ~ 2024.8.20
- 입법예고 : 2024.8. ~ 2024.9. (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도 의견 :
- 조례·규칙심의회 : 2024.10.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⑦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과 시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5. 소형 면적 주택

⑧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단독주택: 총공사비의 80%이내, 최대 120만원</p> <p>2. 공동주택: 총공사비의 80%이내, 세대당 최대 100만원(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p> <p>3. 국비 등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p> <p>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p>	<p>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p> <p>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p> <p>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p> <p>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p> <p>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p> <p>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⑤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5.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6. 그 밖의 접수순

⑥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⑦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과 시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5. 소형 면적 주택

⑧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조례 제2071호, 2024. 7. 18. 공포·시행)에 따라 물품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5·6급 사업소의 구분을 없애고, 사업소로 통일하여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안 제2조 및 제15조)

나.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2조, 제14조 및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 (<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회계과(계약2팀)

(전화:055-330-3116, FAX:055-722-4740, 이메일:shlim061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과 담당자 임수현(☎ 055-330-69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의견	
처리결과 통보희망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자치법규명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p>※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p>
----	---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제안이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조례 제2071호, 2024. 7. 18. 공포·시행)에 따라 물품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4·5·6급 사업소의 구분을 없애고, 사업소로 통일하여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안 제2조 및 제15조)
-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2조, 제14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4. 8월중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4. 8월중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4. 8월중
- 입법예고 : 2024. 8. 29. ~ 2024. 9. 18.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0월중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청

- 1)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 2)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 3) 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
-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나. 의회

- 1)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 2)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 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 1)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 과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으로 한다.
- 2)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3)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회계담당자로 한다.

2. 읍·면·동

- 1) 물품관리관: 읍·면·동장
- 2) 물품출납공무원: 총무업무 팀장
- 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시장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제1호 가목 중 “장 -”을 “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행정국장 -”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회계과장 -”을 “회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장소,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출장소, 4급 사업소의 장 -”을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6급 사업소장, 읍·면·동장 -”을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2. 의회

사무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전부개정 2007.8.13, 개정 2019.6.28., 2019.7.26.)</p> <p>1. 시</p> <p style="margin-left: 20px;"><u>가. 본청</u> <u>물품관리관: 회계과장</u> <u>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u>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주무 팀장</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의회</u> <u>물품관리관: 사무국장</u> <u>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u>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u></p> <p style="margin-left: 20px;"><u>다. 직속기관, 출장소 및 4급 사업소</u> <u>물품관리관: 각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의 장</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u></p> <p style="margin-left: 20px;"><u>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u>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u></p>	<p>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 ----- ----- ----- ----- ----- ----- -----</p> <p>1. --</p> <p style="margin-left: 20px;"><u>가. 본청</u> 1) <u>물품관리관: 회계과장</u> 2) <u>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u> 3) <u>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u> 4)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의회</u> 1) <u>물품관리관: 사무국장</u> 2) <u>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u> 3) <u>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 담당자</u></p> <p style="margin-left: 20px;"><u>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u> 1) <u>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 과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으로 한다.</u> 2) <u>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u></p>

라. 5급 사업소(칠암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 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자

마. 6급 사업소(대성동고분박물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공무원 -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2. 읍·면·동

물품관리관: 읍·면·동장

물품출납공무원: 총무업무 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② (생략)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생략)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3)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4)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회계담당자로 한다.

<삭 제>

<삭 제>

2. 읍·면·동

1) 물품관리관: 읍·면·동장

2) 물품출납공무원: 총무업무 팀장

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1. 본 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

가. 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가. 직속기관, 출장소, 4급 사업소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5·6급 사업소장, 읍·면·동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1. ---

가. --- 장: -----

나. 행정국장: -----

다. 회계과장: -----

2. 의회

3. ----- 사업소, 출장소, -----

가. -----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

나.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읍·면·동장: -----

공 고

김해시 공인조례 제6조(등록) 및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김 해 시



1. 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24. 8. 29.

2. 신조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 유	관리부서
김해시 화장실 등 주변 주민금인 지역주민 출납원	1.8 *1.8	흑인조	훈민정음체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노인복지과

3. 신조 등록 인영부 : 1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등 록	김해시 화장실 등 주변 주민금인 지역주민 출납원	1.8 *1.8	흑인조	훈민정음체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부분 준공)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8-157호(2018.06.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김해시 고시 제2018-306호(2018.12.07.)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김해시 고시 제2024-240호(2024.07.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근린공원 1공구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성은개발 대표이사 김치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60-2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136,719.8㎡ (전체 면적)
 - 금회 준공 면적 : 22,760.2㎡ (공원 1공구)
 - 용도별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36,719.8	100.0	
공동주택용지	72,239.6	52.8	
일반상업용지	26,187	19.2	
도시기반시설용지	38,293.2	28.0	
주차장	1,893	1.4	1개소
공 원	23,491.2	17.2	1개소 (1공구/2공구)
1공구	22,760.2	16.7	금회 준공
2공구	731	0.5	
도 로	12,909	9.4	4개소

5. 준공일자 : 2024년 8월 29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공 원	근린공원(1공구)	개소 (면적:m ²)	1 (22,760.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인 (주)성은개발 및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